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민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65

발 의 년 월 일 : 2025년 02월 03일
발 의 자 : 이민석 의원(1명)
찬 성 자 : 강석주, 곽향기, 김규남, 김영철, 김원중, 김재진, 김종길, 김태수, 김현기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박ㆍ석, 박성연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윤기섭, 윤종복, 이효원, 최민규, 허ㆍ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○ 3～4인 가구를 위한 중 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 명칭 변경 및 규제 완화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,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맞춰 별표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형생활주택(원룸형)을 도시형생활주택(아파트형)으로 변경함(안 별표 4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 등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1호마목의 “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”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의 “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”란에 사용된 기호 (·) 중 “단,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(원룸형)”을 각각 “도시형생활주택(아파트형)”으로 한다.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

[별표4]

1.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대상 건축물		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
용 도	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	
마. 공동주택		• 아파트 : 3미터 이상 단, 30세대 미만인 도시형 생활주택(원룸형)은 2미터 이상 • 연립주택 : 2미터 이상 •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

2.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대상 건축물		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
용 도	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	
라. 공동주택 다만,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.		• 아파트 : 3미터 이상 단, 30세대 미만인 도시형 생활주택(원룸형)은 2미터 이상 • 연립주택 : 1.5미터 이상 •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

개 정 안

[별표4]

1.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대상 건축물		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
용 도	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	
마. 공동주택		• 아파트 : 3미터 이상 단, 도시형생활주택(아파트형)은 2미터 이상 • ---- : ------ • ---- : ------

2.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대상 건축물		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
용 도	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	
라. 공동주택 다만,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.		• 아파트 : 3미터 이상 단, 도시형생활주택(아파트형)은 2미터 이상 • ---- : ------ • ---- : ------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4 제1호마목의 “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”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의 “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”란에 사용된 기호(、) 중 “단,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(원룸형)”을 각각 “도시형생활주택(아파트형)”으로 하는 것은 관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,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맞춰 별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 병 준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	김 진 형

☏ 02-2180-7954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